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30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: 박홍배·김문수·이용우

김남근 • 이광희 • 박지원

윤준병 • 박희승 • 민병덕

고민정 · 김태선 · 백승아

송재봉 • 박정현 • 복기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.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·처·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행정부"를 "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부·처·청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(이하 "행정부"라 한다)"으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의)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설립 최소 단위에 맞춰 근무시간 면제 한도 심 의·의결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 공무	제5조(노동조합의 설립) ①
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	
경우에는 국회 • 법원 • 헌법재	
판소·선거관리위원회· <u>행정부</u>	「정부조직
· 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	법」에 따른 부・처・청 및 같
・도・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	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
(자치구를 말한다) 및 특별시ㆍ	른 행정기관(이하 "행정부"라
광역시・특별자치시・도・특별	<u>한다)</u>
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	
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